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84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8. 6.
4. 회부일자 : 2019. 8. 13.

II . 제안이유

1. 본청 신청사를 현 교육시설관리본부 부지에 건립함에 따라 교육시설관리본부를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봉사관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2. 학생교육원 천마산야영교육장의 소재지 변경 및 영월야영교육장 신설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추가

III. 주요내용

1.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안 제39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6 (하월곡동)
2.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소재지 변경 및 신설 (안 별표2)
 - 천마산야영교육장 소재지 변경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
 - 영월야영교육장 신설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304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조례안 별첨 4]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 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조례안 별첨 2]
3. 협의 : 예산담당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협의완료
4. 기 타
 - 가. 신·구조문대비표 : [조례안 별첨 1]
 - 나. 입법예고(2019. 7. 19. ~ 7. 26.) : 의견 없음.
 - 다. 교육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조례안 별첨 3]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 843호로 제출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관리본부가 성북구 소재의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천마산야영교육장의 소재지 변경과 영월야영교육장 신설 사항을 조례에 추가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에 대한 검토

- 교육시설관리본부는 당초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사업 추진계획」에(학교지원과-14238, 2017.9.25.) 따라 용산구 녹사평대로 73 한강중학교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017.12.15. 원안가결).

그러나 한강중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의 반대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곤란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¹⁾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추진 일정²⁾ 연쇄적으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³⁾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이전 위치를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교육시설관리본부(시설1과-1888, 2018.10.02.)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사업 변경계획 검토」

○ 한강중 도시계획시설 변경 기간 및 비용 증가

- 본부이전사업은 한강중학교 운동장(학교용지)에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 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함.

- 사업기간 : (당초) 2018.01. ~ 2019.12. → (변경) 2018.01. ~ 2021.03.(추정)

※ 서울특별시 협의 결과 : 심의 결과 재검토나 보류 결정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 : 약 2억 4,000만원(추정)

2) 신청사 건립 공사기간 : 2019. 10. ~ 2021. 11.

3)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8.12.14. 원안가결)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재지 변경은 기존 공유개산 관리계획(한강중학교 이전) 취소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후속 입법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초 한강중학교로의 이전이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학교 및 직속기관에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서울특별시 동북권에 위치한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가 서남권에 대한 수용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부칙이 교육시설관리본부 이전을 위한 시행일을 2019년 12월 16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이전 날짜를 명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전 업무의 연기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소재지 변경 및 신설에 대한 검토

- 먼저 천마산야영교육장의 소재지 변경은 이미 지난 2019년 1월 9일 기존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1-1'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로 지번이 변경되었는바(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2019.1.21.), 금번 개정조례안은 등기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영월야영교육장 신설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폐교활용 수련시설 확충사업」(체육건강과-13230, 2012.8.6.)에 따라 舊관운초등학교(폐교) 유휴부지를 지난 2013년에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 폐교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후(D등급) 건물 등을 철거하고 현재 야영텐트 부지 및 캐러번 부지 등 캠핑장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동 캠핑장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및 교직원 연수(워크숍) 지원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영월야영교육장을 서울시교육청학생교육원의 야외교육장으로 추가한 것은 영월야영교육장 조성이 완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 할 것인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 27.] [대통령령 제28679호, 2018. 2. 27., 일부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